

과업지시서
(소방시설 보수공사)

2021. 05.

한 국 항 공 대 학 교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명 : 한국항공대학교 소방시설 보수공사

1.2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항공대학교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소방시설전문공사업 등록 업체)

1.3 공사범위

1.3.1 소방시설 보수공사 : **특기 과업지시서 참조**

가. 화재감지기 미설치(미부착 포함)	1식
나. CO2설비 기동용 솔레노이드 동판 파괴침 불량	1식
다. 방화문 감지기 수신기 도통 단선	1식
라. 확산소화기 미 설치	1식
마. 소화전 펌프 기동 등 불량	1식
바. 감지기 선로 단선	1식
사. 방화문 연동 불가	1식
아. 기타사항(위 보수를 위한 부수작업 등)	1식

※ 현장 사전 방문하여 공사범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여

- 문의사항 : 시설팀 김성현 차장 02-300-0382

1.4 공사기간 : 발주 후 약7일

1.5 하자기간 : 준공일로부터 1년

제 2 장 일반사항

2.1 이 과업지시서는 한국항공대학교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이 과업지시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2.3 본 공사는 인력, 장비, 재료의 공급을 포함하여 모든 기능이 완전하도록 한다.

2.4 적용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닌다.(내역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2.5 책임한계

2.5.1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일치 되도록 위생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2.5.2 공사 착공에 따른 작업장의 안전시설 설치 및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은 필히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2.5.3 기존시설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전기, 기계설비, 건축 등의 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존시설의 손상이나, 훼손이 발생했을 때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6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7 공사착공

-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할 때에는 공사착공 서류(착공계 및 공사 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7.1 현장대리인

-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현장대리인을 즉시 배치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2.7.2 현지어건 조사

계약상대자는 시설팀과 공동으로 공사 착공 후 빠른시간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조사 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한다.

- (1) 각종 재료확인

- (2) 보수장소 및 작업공간 확인
- (3)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

2.8 공사시공

2.8.1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시설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2 현장관리

-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 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2) 본 공사는 노력, 장비, 재료의 공급을 포함 하여 모든 기능이 완전 하도록 한다.
- (3) 공사 진행 시 추가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공사비 증감 없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4)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수속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5)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며 그외, 제품은 사용 승인원 및 카다로그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된 것에 한한다.
- (6) 공사에 사용하고자 반입된 자재는 시설팀의 검사를 얻은 후 사용하며,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7) 본 공사 실시 중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이 우려되는 곳은 보호조치 후 시행 하고 손상이 발생한 부분은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 (8) 냉·난방 준비일정과 간섭되는 경우, 시험 등의 일정을 조정하여, 냉·난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9) 시운전중 발생한 배관의 핀홀 등 보수작업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 (10)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풍기와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보안 및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11)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2.9 준 공

- 2.9.1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받기위해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한다.

2.9.2 준공도서 제출

- (1) 준공계 1부.
- (2) 준공검사원 1부.
- (3) 준공사진(전, 중, 후/칼라) 1부.
- (4) 하자보증서(1년) 1부.
- (5) 각종 법정경비 지출내역 1부.
- 환경보전비 지출내역, 산재·고용보험 완납증명서 등
-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필요시)

제 3 장 특기 과업지시서

3.1 소방시설보수공사

3.1.1 공사내역

번호	건물명	위 치	보수내용
1	공학관	지하1층 CO2 저장실	감지기천장미부착:반자설치및감지기천장부착요함(2개)
2		지하1층	CO2설비기동용솔레노이드동판파괴침불량교체요함(3개)
3		전자관 401호 앞	방화문 감지기 수신기 도통 단선 : 수신기 정비 요함
4		방재실	3F-4 방화문 수신기 기동 기판 불량 : 정비 요함
5		PH층(전자관방향)	주계단 감지기 탈락
6	학생회관	1층 커피점	주계단 밑 및 커피점 내 창고 감지기 미설치 : 증설 요함(총3곳)
7		1층주방	배식구 화구위 확산소화기 미설치 : 증설 요함
8	창업보육센터	1층	1F-3소화전펌프기동등불량:교체요함
9		1층시청각실무대	무대 좌측, 우측 감지기 미설치 : 증설 요함
10	항공우주센터	2층	2F-B 감지기선로 단선(공통선로 단선)
11		B1F 기계실 내 영선반	감지기미설치:증설요함
12	강의동	2층 복도 양쪽	방화문 연동 불가 (제어연동선 없음) : 증설 요함
13		3층 복도 양쪽	방화문 연동 불가 (제어연동선 없음) : 증설 요함

3.1.2 공사의 수행

- (1) 시공업자는 공사의 착공전 착공계 및 공사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공정, 작업인원 등을 보고하고 시설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2) 시공업자는 공사 시행 전 소방 및 관련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이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 (3) 시공업자는 공사 중 시설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때 시설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 (4) 시공업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시설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없거나,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팀의 해석에 따른다.
- (5)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시키고 그중 1명을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시설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공사의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 (6) 현장 대리인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 시설팀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유급 자격자이상 자격 소지자로 한다.
- (7) 시설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공시 시설팀의 입회를 받아야 하는 개소에 대하여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8) 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시설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9) 시공업자는 시공전(착공신고서 제출전)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시설팀과 협의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시공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3.1.3 사용자재 및 기기

- (1)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내역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설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I.S.O,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또는 그 이상인 제품순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이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시설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팀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사의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3) 검수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작업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2 과업지시서 해석

- (1) 본 과업 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이 협의토록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3. 3 적용규정

- 3. 3.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 (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3)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 (4)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5) 전기 내선규정
- (6) 기타 관계 법규 끝.